

119감염관리실 앞면 간판(제6조 관련)

1. 설치대상 :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

2. 설치방법

가. 재 질 : 랩핑 및 시트작업 등 내구성이 우수한 방법으로 설치할 것

나. 디자인 : 119감염관리실의 한글 및 영문명과 공식 심벌마크는 하단의 이미지를 따라 설치한다. 소방본부 및 소방서, 안전센터명 등 설치 장소는 필수 표기하되 색상 및 위치 등의 세부 디자인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